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38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이헌승 · 이성권 · 김선교
정성국 · 유용원 · 김승수
박덕흠 · 김상훈 · 김 건
김도읍 · 김예지 · 주호영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 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

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감시법인의 신설

- 1) 시장감시법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 2)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 대한 시장감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제4항 및 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 삭제 등).
- 3)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2 및 제414조의3 신설).
- 4)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와 감시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4조의7 및 제414조의12 신설).
- 5)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며, 임원은 회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414조의10 신설).
- 6)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11, 제414조의13 및 제414조의17 신설).
- 7)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414조의16 및 제414조의18 신설).

나.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함(안 제377조, 제378조제1항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이 법에서 “시장감시법인”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14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감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를 “이하 “거래참가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을 “시장감시법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3조제2항제5호 중 “거래소”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

제323조의10제2항제2호 중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2호 중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

제373조의2제2항제5호 중 “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을 “공시규정”으로 한다.

제373조의7의 제목 중 “상장 및 시장감시”를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76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을 “결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8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8조의 제목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을 “(결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8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인”을 “13인”으로 한다.

제388조제2항 중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을 “제400조까지 및”으로 한다.

제7편 제4장(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2조제1항 중 “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을 “공시규정”으로 한다.

제7편의2(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편의2 시장감시법인

제1장 총칙

제414조의2(설립) ①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14조의3(인가) ① 제414조의7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4(인가요건의 유지)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6(준용규정) ①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관하여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를 준용한다.

제2장 업무 및 조직 등

제414조의7(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장감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거래소의 회원과 거래참가자(이하 “거래참가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6. 제414조의11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14조의1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시장감시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각 호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14조의8(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14조의9(정관) ① 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감시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4조의10(임원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3인 이상으로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시장감시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1(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14조의12(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등이 거래소등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거래참가자등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소등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거래소등에 대하여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거래참가자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414조의13(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5호에

다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법인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4조의14(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에 준용한다.

제414조의15(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 거래소등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등

제414조의16(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4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

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제414조의17(시장감시법인 규정의 승인) 시장감시법인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4조의18(준용규정) 시장감시법인의 보고와 검사에 관하여 제410조를 준용한다.

제423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4조의16제1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7의3. 제414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26조제4항 중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를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소는”을 “시장감시법인은”으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 시장감시법인”으로 한다.

제444조에 제2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제445조제12호 중 “제383조제3항”을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 중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
(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14제2항
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의2.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제335조의7, 제
379조 또는 제41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3조제3항 또
는 제441조”를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제1항 또는 제441조”로 한
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4의2]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4조의1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3에 따른 인가 또는 제41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414조의10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제414조의10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4조의10제6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
6.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7. 제41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414조의14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14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14조의16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4조의17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14조의18에서 준용하는 제4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5.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6.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17. 제426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1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이 법에서 “시장감시법인”</u> <u>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공정</u> <u>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14조</u> <u>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u> <u>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u> <u>감시하는 자를 말한다.</u>
제78조(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 관 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채결회 사는 다자간매매채결업무를 함 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매매채결대상상품 및 다자간 매매채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u>이하 이 조, 제4</u> <u>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u> <u>가자”라 한다</u>)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② (생 략) ③ <u>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u> <u>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u>	제78조(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 관 한 특례) ① ----- ----- ----- ----- -----. 1. ----- ----- ----- <u>이하 “거래참가</u> <u>자”라 한다</u> -----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감시법인</u> 은----- -----

<u>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u> <u>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u> <u>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u> <u>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u> <u>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u> 1. ~ 4. (생략) <u>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u>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u> <u>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u> <u>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u> <u>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u> <u>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u> <u>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u> <u>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u> <u>한다.</u> <u>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u> <u>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u> <u>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u> <u>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u> <u>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u> <u>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u> <u>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u> <u>인하기 위한 경우</u> ⑤ ~ ⑧ (생략)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생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현행
---	--

략)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4. (생략)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이행·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
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생략)

제323조의10(업무) ① (생략)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생략)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
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

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산회사-----

6. (현행과 같음)

제323조의10(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
관-----

우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 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u>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u>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4. (생략) ② ③ (생략)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u>공시규정</u>·<u>시장감시규정</u>·<u>분쟁조정규정</u>,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	제326조(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 -----<u>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u>-----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공시규정</u>----- ----- -----
---	---

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 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 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 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 할 것 6. ~ 9. (생략) ③ (생략)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 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 진다. 1. (생략)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생략)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	----- ----- ----- ----- ----- 6.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3조의7(상장 등의 책무) ----- -----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376조(정관)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	---

항

13. (생 략)

② (생 략)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
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 2. (생 략)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
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
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
증권 · 결제품목 ·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
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에 관한 업무

4. ~ 7. (생 략)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
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
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7조(업무) ① -----

-----.
제4호-----

결제기관-----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삭 제>

관한 업무

9. (생략)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
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 13. (생략)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
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을 영위하는 경우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
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
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
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
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제378조(결제기관) <삭제>

<u>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380조(임원)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시장감시위원장 1인</u>	<u><삭 제></u>
4. 이사 <u>12인</u> 이내	4. ----- <u>13인</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생략)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u>제400조까지</u> , 제404조 및 제426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② ----- ----- ----- ----- ----- <u>제400조까지</u> 및 ----- ----- -----.
<u>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u>	<u><삭 제></u>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u>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u>	<u><삭 제></u>
1. <u>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u>	

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채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
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
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
라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
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
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
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감리할 수 있다.

<삭 제>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

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

<삭 제>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공시규정-----

-----.

제7편의2 시장감시법인

제1장 총칙

제414조의2(설립) ① 시장감시법
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
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14조의3(인가) ① 제414조의7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
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
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
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

<신 설>

<신 설>

<신 설>

출 것

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

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

합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

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4(인가요건의 유지) 시

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3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

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6(준용규정) ① 시장감

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 설>

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관하여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를 준용한다.

제2장 업무 및 조직 등
제414조의7(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장감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거래소 등”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거래소의 회원과 거래참가자(이하 “거래참가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

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6. 제414조의11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14조의1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시장감시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각 호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14조의8(회원) 다음 각 호의

<신 설>

<신 설>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14조의9(정관) ① 시장감시법
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시장감시법인은 정관을 변
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4조의10(임원 등) ① 시장감
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3인 이상으로서 이사회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

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신 설>

<신 설>

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시장감시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1(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14조의12(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등이 거래소등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거래참가자등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소등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거래

<신 설>

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거래소
등에 대하여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
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거래참가자등
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적용한다.

제414조의13(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5
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
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법인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할 수 있다.

제414조의14(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
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
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
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에 준용한다.

제414조의15(거래소 업무관련 규

정 등에 대한 협의) 거래소등
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
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3장 감독 등

제414조의16(시장감시법인에 대

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
장감시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4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
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
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신 설></u> <u><신 설></u>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 설></u> <u><신 설></u>	<u>는 조치</u> <u>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u> <u>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제4</u> <u>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u> <u>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u> <u>다.</u> <u>제414조의17(시장감시법인 규정</u> <u>의 승인) 시장감시법인은 시장</u> <u>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u> <u>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u> <u>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u> <u>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u> <u>야 한다.</u> <u>제414조의18(준용규정) 시장감시</u> <u>법인의 보고와 검사에 관하여</u> <u>제410조를 준용한다.</u> 제423조(청문)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414조의16제1항에 따른</u> <u>인가의 취소</u> <u>7의3. 제414조의16제3항 또는</u> <u>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u>
---	--

8. · 9.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u>금융투자업관계기관</u> 또는 <u>거래소</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u>거래소</u>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u>거래소</u>,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u>임직원</u>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u>면직요구</u> 8. · 9. (현행과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법인</u>----- ----- -----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감시법인</u>은----- -----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 ----- -----<u>거래소, 시장감시법인</u>----- -----
--	---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7의2. (생략)

<신설>

28.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

②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1. ~ 27의2. (현행과 같음)

27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8.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 -----

자	-----
13. ~ 35. (생략)	13. ~ 35. (현행과 같음)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 제3항, <u>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 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 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 계를 가진 자</u>	36. ----- ----- <u>제327조제3항, 제383 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414조의14제2항을</u> ----- ----- -----
37. ~ 44. (생략) <u><신설></u>	37. ~ 44. (현행과 같음) <u>44의2. 제414조의14제1항을 위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u>
45. ~ 48. (생략)	45. ~ 48.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43. (생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 의8, 제325조, <u>제335조의7 또 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 을 사용한 자</u>	44. ----- ----- <u>제335조의7, 제379조 또는 제414조의5</u> ----- -----
44의2. ~ 49. (생략)	44의2. ~ 49. (현행과 같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 조, 제328조, 제367조, <u>제383조</u>	② ----- ----- <u>제383</u>

<u>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 ④ (생략)	<u>조제3항, 제414조의14제1항 또는 제441조</u>-----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